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7. 16(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0. 7. 7
-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 다. 회부일자 : 2010. 7. 8
- 라. 상정일자 : 2010. 7. 14(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 덕 중
 - 검토보고 : 교육전문위원 한 태 형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안’ 과 관련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지역교육청 역할 정립과 기능이 강화되는 지역교육청의 현장지원 기능을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반영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 간의 원활한 사무이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역교육청의 감사에 관한 위임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호)
 - 초·중학교 종합감사를 본청으로 일원화하여 감사시스템을 개선
 - 감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감사에 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함.
 - 지역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위임 규정 삭제(안 제5조제4호)
 - 학생수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업무를 본청으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코자 학생수용에 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함.
 - 지역교육청에 학교현장 지원 위임 규정 신설(안 제5조, 제25호, 제26호)
 -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지원사무의 다음에 관한 사항
 - 교수학습활동 및 창의체험활동 지원, 진로지도, 강사확보·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운영
 -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 유아·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에 관한 교육복지
 - 학생의 안전 및 건강
 - 학생 통학구역
 -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 평생교육 진흥
 - 일반계 고등학교 교수학습활동 지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보건·급식·시설유지보수 업무 등 학교현장 지원 업무 위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교육청을 교육수요자와 학교현장 지원 기능위주로 조직 개편하기 위함.
 -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조항 삭제 (제8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
2010. 9. 1일자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현장지원 기능을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7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장에게 위임한 지역교육청의 감사에 관한 규정 및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지원사무, 일반계 고등학교 교수학습활동 지원사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보건·급식·시설유지보수 업무 등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 위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의 폐지에 따라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 | | |
|---|------|
| • 지역교육청의 감사에 관한 위임 규정 | 〈삭제〉 |
| • 지역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위임 규정 | 〈삭제〉 |
| • 지역교육청에 학교현장 지원 위임 규정 | 〈신설〉 |
| ▷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지원사무 | |
| ▷ 일반계 고등학교 교수학습활동 지원사무 | |
|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보건·급식·시설유지보수 업무 등 학교현장 지원 업무 | |
| •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조항 | 〈삭제〉 |

- 한편, 교과부 기능개편 방안에 따른 시교육청의 세부 기능개편 내용을 보면 현재의 담임장학은 컨설팅 장학으로 전환하고 지역교육청의 감사, 학생수용, 학교평가 업무는 폐지하여 본청 등으로 이관하며 지역교육청의 학교현장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음.

※ 기능개편 방안

교과부 개편 방안		교육청 개편 방안
교육청의 규제 감축 및 기능 재정립	컨설팅 장학	· 담임장학 폐지 ⇒ 컨설팅 장학으로 전환
	기획·사안 감사	· 지역교육청 감사기능 폐지 ⇒ 본청 종합감사 축소, 기획·사안 감사 위주로 전환
	지역교육청 학교평가 폐지	· 지역교육청 학교평가 폐지 ⇒ 본청 학교평가 총괄기획, 교육과학연구원 학교평가 수행
	규제업무 축소	· 학교현장 자율을 저해하는 규제·행사 정리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역할 조정	고등학교의 일부 업무 이관	· 일반계고의 컨설팅 장학 및 고교의 보건·급식·시설관리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
	지역교육청 일반 행정업무 축소	· 학교평가, 종합감사, 수용계획, 교원인사(전산처리 가능한)업무 본청으로 이관·통합
	직속기관 간의 기능 재배분	· 학교평가는 본청에서 총괄, 연구원이 수행 · 교원연수 수요자조사·선발업무 연수원에 이관
지역교육청에 학교현장 지원 기능대폭강화	학생 지원	· 강사확보 어려운 심화과정 지역교육청에 개설 · Wee 센터 운영을 통한 부적응 학생 지원 · 독서교실 운영 등 다양한 학생지원
	강사 지원	· 단위학교 확보가 곤란한 원어민·예체능강사, 심화과정 강사, 과학 등 교과 보조교사를 지역청에서 확보·지원
	현장 지원	· 순회교사제 확대 운영, 현장컨설팅 지원단운영, 교수학습자료실 운영, 학교자율장학 지원
	학부모 지원	· 학부모회 지원, 고충상담 및 교육정보 제공, 학부모 연수, 학부모 활동 지원

- 금번 조례개정안은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안’에 따라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지역교육청 역할 정립과 기능이 강화되는 지역교육청의 현장지원 기능을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반영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 간의 원활한 사무이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지역교육청의 학교평가업무를 시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기획·총괄 부분은 시교육청이 학교평가업무 수행은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에서 추진토록 하고 있으나, 학교평가 업무를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연구원의 업무성격에 비추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함
- 향후 지역교육청의 학교현장 지원 강화, 교육과학연구원의 학교평가업무 수행, 감사 및 학생수용 업무 일원화 등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인력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력조정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지역교육청의 감사업무를 시교육청으로 일원화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자칫 감사대상 기관의 과다로 인해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김원희, 강병수, 김영태 위원
 - 지역교육청에서 맡게 될 컨설팅 장학 등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업무를 강화하려면 전문 장학인력 등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나 현재 인력지원 계획이 매우 빈약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답 변 >

- 기획관리국장 한덕중
 - 현재 충분한 인력수급은 어려우나 향후 내부 규정인 규칙등을 개정 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고려하여 세부 인력 조정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질 의 >

○ 노현경, 배상만 위원

- 지역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을 위해서는 감사나 인사 등의 주요업무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청으로 모두 이관하면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 답 변 >

○ 기획관리국장 한덕중

- 이번 조직개편은 지역교육청 기능 축소라기보다는 현장에 대한 지원 센터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현재의 종합 감사나 기강감사 등 실효성이 적은 감사는 폐지 하는 등 지도·감독 부분을 축소하여 학교의 부담을 줄여 주고, 대신 본청에서 통합하여 상시감사, 계통감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지역교육청은 순수한 현장지원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음.

5. 토론요지

- 가. 찬성 : 권용오, 김원희, 강병수, 김기홍, 김영태, 노현경, 배상만, 이수영 위원
-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 8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지원사무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교수학습활동 및 창의체험활동 지원,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

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다. 유아·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에 관한 교육복지

라. 학생의 안전 및 건강

마. 학생 통학구역

바. 학부모의 학교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사. 평생교육 진흥

26.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일반계 고등학교 교수학습활동 지원

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보건

다.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급식

라.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유지보수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기타 소속 기관장·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하 "의사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제2조 ~ 제4조 (생략)</p> <p><u>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u>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지도·감독 2. 제1호의 각급학교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단, 중학교·고등학교 병설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통합학교 제외) 3. 공·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와 변경인가 4.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 및 변경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제2조 ~ 제4조 (현행과 같음)</p> <p><u>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u>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현행과 같음) 4. <삭제>

현행	개정안
<p>5.~2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5.~24. (현행과 같음)</p> <p>25. <u>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지원사무의 다음에 관한 사항</u></p> <p>가. <u>교수학습활동 및 창의체험활동 지원,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u></p> <p>나. <u>과학·기술교육의 진흥</u></p> <p>다. <u>유아·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에 관한 교육복지</u></p> <p>라. <u>학생의 안전 및 건강</u></p> <p>마. <u>학생 통학구역</u></p> <p>바. <u>학부모의 학교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u></p> <p>사. <u>평생교육 진흥</u></p> <p>26. <u>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u></p> <p>가. <u>일반계 고등학교 교수학습활동 지원</u></p> <p>나. <u>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보건</u></p> <p>다. <u>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급식</u></p> <p>라. <u>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유지 보수</u></p>
<p>제6조~제7조 <생략></p> <p><u>제8조(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u> <u>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의사국장에게 위임한다.</u> 1.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p>	<p>제6조~제7조 (현행과 같음)</p> <p><u>제8조 <삭제></u></p>

현행	개정안
<p><u>의한 소속 6급상당이하 지방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u></p> <p>2. <u>소속 5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보직 부여 및 겸직허가</u></p> <p>3. <u>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시 일상 경비출납원 임·면</u></p> <p>4. <u>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확정</u></p>	